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19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 (월) ~ 3월 22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
내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www.onelick.moe.go.kr)
-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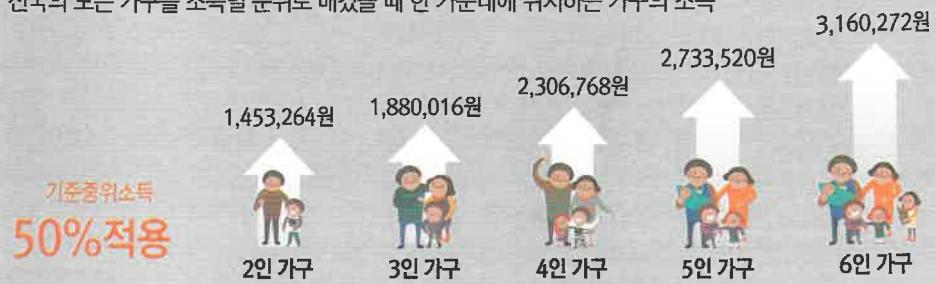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2)}$$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지원기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 종류

구 분	내 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③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일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2% 이하		
학교장 추천	○	○	○		

*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소급지원(연1회 지급되는 교육급여 부교재비 등은 전액 지원)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 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원	71,000원	-	-
중학생	209,000원	81,000원	-	-
고등학생	209,000원	81,000원	해당 학년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로 지급	감면 또는 지원

교육비

구 分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
지원 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 설치	통신사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학년 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접속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서비스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

교육급여 선택

교육비 선택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신청서비스 소개
※ 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선택 시 교육비 동시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초중고 교육비 동시 신청 등의 여부 확인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인정보 입력
- 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선택
- 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
※ 교육비 단독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

가족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 신청인은 본인과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
※ 만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 처리 필요

소득재산 신고

- 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부모 필수)
- 거주형태,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 추가서류 업로드(전월세계약서 등)

교육정보화 신청

-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 교육비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 교육급여만 신청 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신청서 작성 완료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
※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 [나의이용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 가능

Q & A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써,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 타 급여 대비하여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장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를 최초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만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주민센터에 수급 의사만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 가능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8년까지는 교육비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 교육급여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교육급여] / [교육비]
※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 가능

Q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19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음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선택하신 결과 통보 방식(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우편, 문자메세지, 기타)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금액 대폭 인상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116,000원에서 **20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162,000원에서 **29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8	2019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132,000원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209,000원
	학용품비	57,000원	81,000원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동시 신청 가능

교육비 단독 신청시에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였으나, 2019년부터 교육급여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만 신청하더라도 온라인으로(PC 또는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하기] - [교육급여] / [교육비]

교육급여 학용품비 연2회 분할지급 → 연1회 일괄지급

연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 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연1회 일괄 지급함으로써, 학용품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